

# 농업·임업·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[ ]가입 [ ]가입탈퇴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: 5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사업장명
	소재지	
	전화번호	팩스번호

신청 근로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연락처	
	채용일	직종부호	주 소정 근로시간
	일용근로자 여부 [ ] 에 [ ] 아니오		월평균보수 원
	해당 연도 보수총액 (※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)	원	전년도 보수총액 (※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)

보험사무 대행기관	번호	명칭
--------------	----	----

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단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·제2항·제4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([ ] 가입을, [ ] 가입탈퇴를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근로자)

(서명 또는 인)

사업장명

소재지

(전화번호: )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보험사무대행기관

소재지

(전화번호: )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## 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(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초본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근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유의사항

1.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·임업 및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 
※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[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]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3.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작성방법
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·임업 및 어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신청 근로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</li> <li>2. 채용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적습니다.</li> <li>3. 직종부호는 다음의 직종부호[한국고용직업분류(KECO, 2025)]를 참고하여 적습니다.  <hr/>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·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</li> <li>4.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.</li> <li>5.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“예” 부분에 표시하고,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“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(일용근로자용)”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</li> <li>6.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(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</li> <li>7.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(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)을 적습니다.</li> <li>8.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(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)을 적되, 직전연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.</li> </ol>

### 처리절차

